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5. 24 선고 2021가단12688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김정원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4. 19.

판 결 선 고 2022. 5. 24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14,110,716원 및 그중 2,550,845원에 대하여 2021. 5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20. 4. 3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,5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C은 원고에게 9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피고 C,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피고 B,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재은

별지